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 및 안내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94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 및 안내	2
2.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 · 관리 교육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24.
3. 회 부 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사용 확대에 따라 일부 독성이 있는 화훼가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령에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여 특히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 및 안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독성이 있는 화훼의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화훼를 판매하는 자가 해당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취급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독성이 있는 화훼의 종류·유형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화훼를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훼의 종류, 취급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성이 있는 화훼의 목록 작성과 소비자 안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¹⁾ 날부터 시행한다.

꽃을 포함하여, 식물 중에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을 가짐에 따라 그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품종이 일부 있음.²⁾

1) '지난'을 '경과한'으로 수정 필요

2) 섬취 시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철쭉, 호홉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투구꽃 등

그런데, 이들 식물 중 일부가 관상용 또는 가공용 등으로 활용되는 화훼로서 유통될 수 있음에도,³⁾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이라 한다)은 독성이 있는 화훼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내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훼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 등이 독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관련하여,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소비됨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에서 일반적인 안전성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화훼는 식용 목적이 아닌 관상용·가공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별도의 제도가 요구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화훼산업법에 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 제도로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독성이 있는 화훼의 종류·유형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목록을 고시하도록 하고, ② 화훼 판매자가 취급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화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성이 있는 화훼의 섭취·흡입·접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관상용으로 활용되는 화훼 중 아네모네는 줄기를 잘라 나오는 즙에 접촉시 피부염의 우려가, 백합은 고양이가 섭취 시 신부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각각 알려짐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 소관 법률로, 이 중 안전성과 관련한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해당함

다만, 개정안에 따라 독성이 있는 화훼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목록에 포함된 화훼의 소비자 선호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해당 화훼를 재배·유통하는 화훼농가 및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와 같은 독성으로 인한 위해가 대체로 화훼의 본래 용도인 관상·가공이 아니라 섭취 등의 오용(誤用)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고려할 때,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화훼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상용 작물인 화훼의 독성에 관한 과학적 기준과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한편, 이에 관한 관계자 간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화훼가 식품의 장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한편, 독성으로 인한 위해가 단순히 구토 등의 일시적 증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부칙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안내 의무 부여에 따라 수범자가 법률 개정을 인지하고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 교육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가 운영하는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u>화원</u> 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 ----- ----- ----- <u>화원</u>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화훼산업 <u>종사자가 운영하는 화원</u> 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 <u>전수하기</u>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① ----- ----- ----- ----- --- <u>전수하고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3조는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훼상품의 개발,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회원 교육사업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인원	250명	100명	105명
사업비(국비)	2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한편, 현행법 제12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회원을 우수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2019년에 화훼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우수회원이 선정된 사례는 없는 상황임.⁵⁾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교육훈련 내용에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를 포함하는 한편,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우수회원의 선정 요건에 해당 교육훈련의 이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방법을 보급하여 안전한 화훼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회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다만, 화훼산업법에 따른 우수회원 제도와는 별도로, 민간협회인 (사)한국화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착한꽃집을 선정한 바 있음(2020년까지 642개소 인증)

다만, 개정안은 앞서 검토한 독성이 있는 화훼에 관한 안전성 관리제도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도의 수용 여부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만약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우수화원 제도의 화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목적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선정 요건인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은 필수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우수화원 제도를 교육훈련 이수 유인으로 활용한다면, 현행법상의 설비 등 요건을 갖춘 화원 중 그 운영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⁷⁾

문 의 처
02)6788-5416

6) 참고로, 아직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화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요건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심사과정에서 우수화원이 선정될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화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